

[첨부] 2023 년 임시주주총회 안건 참고자료

제 1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前	변경 後
<p>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13.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 기기 제조 및 판매업 40. 2차전지 관련 부품 및 소재 제조 및 판매업</p>	<p>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13.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 기기 <u>및 부품의</u> 제조 및 판매업 40. 2차전지 관련 부품 및 소재, <u>설비의</u> 제조 및 판매업</p>
<p>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⑤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중략)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본인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p>	<p>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⑤ <u>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u>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u>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u>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u> ⑥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u>당해 부여</u>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u>7년</u>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중략)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본인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p>

<p>2.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p> <p>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2.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p> <p>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p> <p>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4.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회사가 법인 또는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6.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4.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회사가 법인 또는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5.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6.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18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18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4.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회사가 법인 또는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6.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4.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회사가 법인 또는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5.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6.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18조의2 (이익참가부 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p>	<p>제18조의2 (이익참가부 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p>
<p>제18조의3 (교환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제18조의3 (교환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제40조의2 (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p>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4조 (감사의 수)</p> <p>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둔다.</p>	<p>제44조 (감사의 수)</p> <p>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p>
<p>부칙 (중략)</p>	<p>부칙 (중략)</p> <p>19. 이 정관은 2023년8월23일부터 시행한다.</p>

제 2 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감사(비상근)	현태민	1981.07.09	3년
학력 및 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공인회계사 전) 안진회계법인, 세일원회계법인 전) 삼도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 현) 새로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		이사회	없음